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41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최단비

피고B

변론 종결2022. 11. 16.

판결 선고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2. 2. 18. 접수 제7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3. 'C은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65,341원 및 그 중 15,1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4.부터, 9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7.부터, 15,1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0.부터, 10,3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 7,9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9.부터, 4,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5. 2. 17.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대위청구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 28. '2017. 7.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22. 2. 18.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2022.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2022. 2. 17.을 기준으로 하여 276,531,804원[= 58,565,341원 + 지연손해금 합계 217,966,463원(= 61,533,534원1) + 3,495,945원2) + 60,896,438원3) + 42,007,068원4) + 32,214,684원5) + 17,818,794원6))]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일인 2022. 2. 17.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2. 17.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2. 17. 당시 C은 G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2. 17.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만 보더라도 합계 276,531,804원이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2. 17. 당시 C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1	토지	익산시 H 대 974㎡ 중 1/4 지분	20,137,4507) 82,700원/㎡ × 974㎡ × 1/4
2	건물	익산시 H 지상 건물 중 1/4 지분	31,398,500
3	토지	익산시 I 대 86㎡ 중 1/4 지분	525,7508) 24,500원/㎡ × 86㎡ × 1/4
합계	52,061,700		

2)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시어머니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한 후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피고가 남편인 C에게 C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된 공유지분을 정당한 대가로서 증여 요청을 하여 이를 증여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생전증여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살펴본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남편인 C은 과거에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직장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2021. 12.경에도 C이 과거에 연대보증을 한 채무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2. 2. 18. 접수 제7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호

별지